

의 안 번 호	제39호
의 결	2018.08.23.
(보 고)	(제13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총무과장
제출연월일	2018.08.2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남북교류 거점도시로서 위상강화를 위한 행정지원 체계 구축 부서개편
- 미래 전략의 역량 강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조직으로 재설계
- 시민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민중심 조직과 기능중복·지원조직의 효율화 추진
- 환경분야 정책 및 집행 일원화를 통해 의사결정의 체계성 도모와 효율적인 조직운영

□ 주요골자

- 가. 시정운영의 미래 주요전략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및 각종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규 행정기구 신설
- 나. 일자리 창출 및 복지업무 강화를 위해 경제·복지분야 기구를 분리하고 부서간 기능 조정 및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본 청	<신설>	기획재정국	
	경제복지국	경제국	명칭변경
	<신설>	복지국	
	환경정책국	<폐지>	
	정책홍보관	홍보담당관	명칭변경
	기획예산관	기획예산과	명칭변경
	소통법무관	의회법무과	명칭변경
	총무과	자치행정과	명칭변경
	<신설>	평화협력과	
	정보통신관	정보통신과	명칭변경
	지적과	토지정보과	명칭변경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명칭변경
	<신설>	지역공동체과	
	<신설>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명칭변경
	가족여성과	여성가족과	명칭변경
	<신설>	보육청소년과	
	체육청소년과	체육과	명칭변경
	<신설>	도시재생과	
직속기관	<신설>	건강증진과	
	<신설>	스마트농업과	
사업소	맑은물환경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명칭변경
	관광진흥센터	관광사업소	명칭변경
	고용복지센터	<폐지>	

다. 격무부서 충원 및 지역현안사업 시행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1,362명에서 1,434명으로 72명 증원 (안 제25조 및 안 별표 4)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18. 8. 10. ~ 2018. 8. 21.(11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결과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을 “홍보담당관, 감사관,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국, 복지국, 문화교육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정책홍보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홍보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민고충사항·애로사항 상담 및 옴부즈만·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의회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정책개발·예산에 관한 사항

2. 의회·법제·통계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소송·규제개혁 정책 추진

4. 회계결산·재산관리 및 청사건립·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세외수입·세무조사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를 “자치행정과, 평화협력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토지정보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구역,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3. 통일경제특구·남북교류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4. 주민·가족관계의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처리와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5. 전산 및 통신 등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6. 지적정리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 “(경제복지국)”을 “(경제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과, 기업지원과, 산림농지과를 둔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일자리 정책”을 “일자리 정책·일자리 지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산림 및 농지보호에 관한 사항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7조의2(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복지정책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지원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3. 노인·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여성·가족 복지에 관한 사항
5. 보육·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체육청소년과”를 “체육과”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체육 및 청소년 진흥에 관한 사항”을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재생과를 둔다.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동주택, 건축 및 주거환경개선,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수도사업단

- 가.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 나. 청소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공원 및 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 라. 공기업회계, 상수도 시설공사, 마을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관로 등 하수도 정비에 관한 사항
- 바. 광고물 정비, 주차질서 등 도시미관에 관한 사항

제19조제7호 중 “관광진흥센터”를 “관광사업소”로 한다.

제19조제7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감악산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마장호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362명”을 “1,43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342명”을 “1,41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명”을 “22명”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총무과 ☎ 940-4123
입안자	총 무 과 장	김 영 준
	인 사 팀 장	양 성 원
	담 당 자	박 광 현

[별표 1]

본청 · 소속기관 ·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제2조 관련)

기관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본 청	파 주 시 청	파주시 시청로 50(아동동)	
직 속 기 관	파 주 시 보 건 소	파주시 후곡로 13(금촌동)	파주시 일원
	(운정보건지소)	파주시 해솔로 90	교하·운정1·운정2·운정3 동 일원
	(문산보건지소)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34	문산·법원·파주·파평·적 성·장단출장소 등
	(탄현보건지소)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649번길 24-7	탄현면 일원
	(월릉보건지소)	파주시 월릉면 휴암로 11	월릉면 일원
	(적성보건지소)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 1013	적성면 일원
	(파평보건지소)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 189-21	파평면 일원
	(야당보건진료소)	파주시 운정로 18(상지석동)	야당·상지석·와동·목동동 일원
	(웅담보건진료소)	파주시 법원읍 곰시길 173-7	웅담·직천·오현리 일원
	(영장보건진료소)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9	영장·기산리 일원
	(문지보건진료소)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955번길 131	문지·오금·낙하·금승리 일원
	(어유지보건진료소)	파주시 적성면 어삼로 34	장현·어유지·적암·울포리 일원
	(두마보건진료소)	파주시 파평면 파평산로 363번길 34	마산·두포·금곡리 일원
	(백연보건진료소)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231	백연·조산·동파리 일원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파주시 통일로 600(아동동)	파주시 일원
사업소	환경수도사업단	파주시 시청로 51(아동동)	
	중앙도서관	파주시 쇄재로 33(금촌동)	
	교하도서관	파주시 숲속노을로 256 (동패동)	
	차량등록사업소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48	
	도로관리사업소	파주시 중앙로 160(금능동)	

기 관 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사업소	공 원 관 리 사 업 소	파주시 경의로 1180	
	관 광 사 업 소	파주시 군내면 제3땅굴로 210-358	
출장소	장 단 출 장 소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220	군내·진동·진서·장단면 일원
하부행정 기 관	문 산 읍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조 리 읍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4	
	법 원 읍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907번길 21	
	파 주 읍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 295	
	광 탄 면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광탄면 해음로 1044	
	탄 현 면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649번길 24-7	
	월 룡 면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11	
	적 성 면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 1013	
	파 평 면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 189-21	
	교 하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교하로 1401(교하동)	
	운 정 1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와동동)	
	운 정 2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와동동)	
	운 정 3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와동동)	
	금 촌 1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새꽃로 215(아동동)	
	금 촌 2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쇠재로 115(금촌동)	
	금 촌 3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경의로 1803(금촌동)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7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434	1,434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392	1,392					
3급	1	1					
4급	11	7	1	2	1		
5급	79	36	2	12	12	1	16
6급 이하 소계	1,300	1,300					
전문경력관 소계	1	1					
연구직 계	2	2					
연구사	2	2					
지도직 계	36	36					
지도관	-	-	-	-	-	-	-
지도사	36	36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	-	-	-	-	-	-
6급 상당 이하 계	3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담당관·단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u>을 둔다.	제3조(국·담당관·단의 설치) ① ----- ----- <u>홍보담당관, 감사관,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국, 복지국, 문화교육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u>-----.
제4조(정책홍보관) <u>정책홍보관</u>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2. (생략) <u><신설></u>	제4조(홍보담당관) <u>홍보담당관</u>----- -----. 1. ~ 2. (현행과 같음) 3. <u>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u> <u><삭제></u>
제4조의2(기획예산관) <u>기획예산관</u>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u>시정의 기획·조정·정책개발에 관한 사항</u> 2. <u>예산·투자심사 등 재정에 관한 사항</u> 3. <u>각종 공모사업·전략사업 발굴, 총괄 추진 및 지원</u> 4. <u>상급기관 현안대응·관리, 각종 주민 공동체사업 총괄 추진 및 육성지원</u> 5. <u>인구정책 총괄 및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및 통합조정·기획</u>	<u><삭제></u>
제4조의3(소통법무관) <u>소통법무관</u>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u>의회·법제·통계에 관한 사항</u> 2. <u>행정심판·소송업무 등에 관한 사항</u> 3. <u>국·공유재산 소송 등에 관한 사항</u> 4. <u>규제 등록·관리 및 규제개혁 관련 정책 추진</u>	<u><삭제></u>

현 행	개 정 안
5.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및 상위법령 불일치 자치법규 정비 6. 지역현장 애로사항 건의과제 발굴 및 개선 7. 시민 고충사항·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관) ----- -----. 1. ~ 2. (생략) <신설> 제5조의2(정보통신관) 정보통신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전산 및 통신 등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U-City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를 둔다. ② -----. 1. (생략) 2. 행정구역, 선거관리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회계결산, 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제5조(감사관) ----- -----. 1. ~ 2. (현행과 같음) 3. 시민고충사항·애로사항 상담 및 읍부즈만·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제5조의2(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의회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정책개발·예산에 관한 사항 2. 의회·법제·통계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소송·규제개혁 정책추진 4. 회계결산·재산관리 및 청사건립·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6조(자치행정국) ① ---- 자치행정과, 평화협력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토지정보과-----. ② -----. 1. (현행과 같음) 2. 행정구역,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3. 통일경제특구·남북교류 및 국제교류에

현 행	개 정 안
<u>관한 사항</u> 4.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주민·가족관계의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와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신 설> 제7조(경제복지국) ① 경제복지국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위생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를 둔다. ② 경제복지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u>일자리정책, 지역경제진흥 및 소상공인지원,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u> 2. (생 략) 3. <u>복지지원의 기획·조정</u>에 관한 사항 4. <u>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u> 5. <u>공중위생업, 식품업 등 위생업종에 관한 사항</u> <신 설> 제8조(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지원과, 평생학	<u>관한 사항</u> 4. 주민·가족관계의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와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5. 전산 및 통신 등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6. 지적정리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국) ① 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과, 기업지원과, 산림농지과를 둔다. ② 경제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u>일자리정책·일자리 지원</u>,----- -----. 2. (현행과 같음) 3. <u>산림 및 농지보호에 관한 사항</u> <삭 제> <삭 제> 제7조의2(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u>복지정책의 기획·조정</u>에 관한 사항 2. <u>복지지원의 기획·조정</u>에 관한 사항 3. <u>노인·장애인 복지</u>에 관한 사항 4. <u>여성·가족 복지</u>에 관한 사항 5. <u>보육·청소년 지원</u>에 관한 사항 제8조(문화교육국) ①----- -----

현행	개정안
습과, <u>체육청소년과</u>를 둔다. ② -----. 1. ~ 4. (생략) 5. <u>체육 및 청소년 진흥에 관한 사항</u> 제8조의2(도시균형발전국) ②-----. 1. ~ 2. (생략) 3. <u>개발행위허가 및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등에 관한 사항</u> 제9조(안전건설교통국) ① <u>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주택과, 건축과를 둔다.</u> ② -----. 1. ~ 2. (생략) 3. <u>공동주택, 건축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u> 4. (생략) 제10조(환경정책국) ① <u>환경정책국에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산림농지과, 지적과를 둔다.</u> ② <u>환경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u> 1. <u>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개발,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u> 2. <u>공원 및 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u> 3. <u>산림 및 농지보호에 관한 사항</u> 4. <u>지적정리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u> 제19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u>맑은물환경사업단</u>	----- <u>체육과</u>-----.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u>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u> 제8조의2(도시균형발전국) ②-----. 1. ~ 2. (현행과 같음) 3. <u>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u> 제9조(안전건설교통국) ① <u>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재생과를 둔다.</u>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u>공동주택, 건축 및 주거환경개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u>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9조(소관사무) -----. 1. <u>환경수도사업단</u>

현행	개정안
가. <u>공기업회계, 상수도 시설공사, 마을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u> 나. <u>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관로 등 하수도정비에 관한 사항</u> 다. <u>청소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라. <u>광고물 정비, 주차질서 등 도시미관에 관한 사항</u> 2. ~ 6. (생략) 7. <u>관광진흥센터</u> 가. ~ 나. (생략) <신설> <신설> 8. <u>고용복지센터</u> 가. <u>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u> 나. <u>기초수급자 상담, 신청접수, 복지업무 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제25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u>1,362명</u>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1,342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20명</u>	가. <u>저탄소 녹색성장,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u> 나. <u>청소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다. <u>공원 및 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u> 라. <u>공기업회계, 상수도 시설공사, 마을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u> 마. <u>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관로 등 하수도 정비에 관한 사항</u> 바. <u>광고물 정비, 주차질서 등 도시미관에 관한 사항</u> 2. ~ 6. (현행과 같음) 7. <u>관광사업소</u>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u>감악산 관리에 관한 사항</u> 라. <u>마장호수 관리에 관한 사항</u> <삭제> 제25조(정원의 총수) ----- ----- <u>1,434명</u>----- -----. 1. ----- : <u>1,412명</u> 2. ----- : <u>22명</u>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단위:명, 백만원)

구분		계	일반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인 원	72	1	6	17	15	3	30
	예산액	12,812	425	2,087	4,043	2,725	422	3,110
일반직	인 원	72	1	6	17	15	3	30
	예산액	12,812	425	2,087	4,043	2,725	422	3,110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준인건비(18년 1,120억)내 인건비 편성

○ 물가상승율(3%)을 고려한 인건비 추계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소요액	12,812	81	3,043	3,134	3,228	3,325
인 건 비	12,812	81	3,043	3,134	3,228	3,325

다. 재원조달방안: 2018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장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세 입		12,812	81	3,043	3,134	3,228	3,325
인 건 비		12,812	81	3,043	3,134	3,228	3,325
세 출		12,812	81	3,043	3,134	3,228	3,325
인 건 비		12,812	81	3,043	3,134	3,228	3,325
재원 조달		12,812	81	3,043	3,134	3,228	3,325
자체 수입	소 계	12,812	81	3,043	3,134	3,228	3,325
	지방세	12,812	81	3,043	3,134	3,228	3,325

□ 기타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일부개정) 1996.12.20 조례 제 159호
- (일부개정) 1997.05.15 조례 제 171호
- (전문개정) 1998.09.22 조례 제 219호 -2
- (전문개정) 1998.11.05 조례 제 232호
- (일부개정) 1999.10.30 조례 제 298호
- (일부개정) 2000.01.22 조례 제 308호
- (일부개정) 2000.11.14 조례 제 357호
- (일부개정) 2002.04.01 조례 제 435호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 (일부개정) 2002.09.06 조례 제 453호
- (일부개정) 2002.09.17 조례 제 458호
- (일부개정) 2003.01.13 조례 제 472호
- (일부개정) 2003.07.12 조례 제 489호
- (일부개정) 2003.07.28 조례 제 492호
- (일부개정) 2004.04.20 조례 제 517호
- (일부개정) 2004.06.30 조례 제 532호
- (전문개정) 2005.02.01 조례 제 559호
- (일부개정) 2005.07.01 조례 제 587호
- (일부개정) 2005.08.01 조례 제 595호
- (일부개정) 2005.10.28 조례 제 607호 (파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 (일부개정) 2006.02.10 조례 제 627호
- (일부개정) 2006.08.11 조례 제 654호
- (전문개정) 2006.12.29 조례 제 688호
- (일부개정) 2007.06.22 조례 제 726호
- (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 742호
- (일부개정) 2008.08.01 조례 제 785호
- (일부개정) 2009.07.01 조례 제 831호
- (일부개정) 2009.08.01 조례 제 832호
- (일부개정) 2010.02.12 조례 제 861호
- (일부개정) 2010.11.15 조례 제 906호
- (일부개정) 2010.12.24 조례 제 919호
- (일부개정) 2011.04.15 조례 제 939호
- (일부개정) 2011.07.25 조례 제 974호
- (일부개정) 2011.10.14 조례 제 987호
- (일부개정) 2011.12.23 조례 제1007호
- (일부개정) 2012.02.13 조례 제1008호

(일부개정) 2012.06.01 조례 제1027호
 (일부개정) 2012.10.29 조례 제1049호
 (일부개정) 2012.12.28 조례 제1059호
 (일부개정) 2013.02.22 조례 제1072호
 (일부개정) 2013.04.05 조례 제1083호
 (일부개정) 2013.05.14 조례 제1100호
 (일부개정) 2013.07.26 조례 제1108호
 (일부개정) 2013.12.12 조례 제1136호
 (일부개정) 2014.04.18 조례 제1152호
 (일부개정) 2014.05.20 조례 제1166호
 (일부개정) 2014.10.06 조례 제1183호
 (일부개정) 2015.06.01 조례 제1217호
 (일부개정) 2015.10.12 조례 제1234호
 (일부개정) 2015.12.28 조례 제1253호
 (일부개정) 2016.03.02 조례 제1278호
 (일부개정) 2016.09.28 조례 제1301호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1339호
 (일부개정) 2017.02.07 조례 제1348호
 (일부개정) 2017.06.30 조례 제1370호
 (일부개정) 2018.02.09 조례 제140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10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주시 본청과 소속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09. 07. 01, 2013.5.14)

제2조(직급·사무분장 및 소재지 등)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 소속기관 및 그 하부조직의 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그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07. 01)

②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전문 개정 2007.12.28]

제2장 본 청

제3조(국·담당관·단의 설치) (조제목 개정 2014. 5. 20)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을 둔다. (개정 2007.12.28, 2008.08.01, 2010. 2.12, 2010.11.15, 2011.7.25, 2012.2.13, 2012.10.29, 2013.7.26, 2014.5.20, 2014.10.6, 2015.6.1, 2016.3.2)

제4조(정책홍보관) (조제목 개정 2014.10.6) 정책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0.2.12, 2013.5.14, 2014.10.6)

1. 시정홍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시책의 홍보기획 및 보도에 관한 사항

제4조의2(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5.14, 2015.6.1, 2015.10.12)

1. 시정의 기획·조정·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2.)
2. 예산·투자심사 등 재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2.)
3. 각종 공모사업·전략사업 발굴, 총괄 추진 및 지원 (개정 2016.3.2.)
4. 상급기관 현안대응·관리, 각종 주민공동체사업 총괄 추진 및 육성지원 (개정 2016.3.2.)
5. 인구정책 총괄 및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및 통합조정·기획(개정 2017.6.30)

[본조신설 2012.2.13]

제4조의3(소통법무관) 소통법무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법제·통계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소송업무 등에 관한 사항
3. 국·공유재산 소송 등에 관한 사항
4. 규제 등록·관리 및 규제개혁 관련 정책 추진
5.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및 상위법령 불일치 자치법규 정비
6. 지역현장 애로사항 건의과제 발굴 및 개선
7. 시민 고충사항·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3.2.]

제5조(감사관)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0.2.12, 2013.5.14)

1. 분청 및 산하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비위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5.14)

제5조의2(정보통신관) 정보통신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3.5.14)

1. 전산 및 통신 등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U-City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2.12]

제5조의3(규제개혁추진단) (삭제 2015.6.1)

제6조(자치행정국) (조제목 개정 2012.2.13)

-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를 둔다.(개정 2012.2.13)
-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2.2.13)
 1. 공무원의 복무·후생복지 및 인사·조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개정 2012.2.13)
 2. 행정구역, 선거관리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개정 2012.2.13)
 3. 회계결산, 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2.2.13)
 4.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개정 2012.2.13)
 5. 주민·가족관계의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와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2.2.13)
 6. (삭제 2012.2.13)

제7조(경제복지국) (조제목개정 2012.2.13)

- ① 경제복지국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위생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를 둔다. (개정 2007.12.28, 2008.08.01, 2010.2.12, 2010.11.15, 2011.7.25, 2012.2.13, 2012.10.29, 2013.12.12, 2014.10.6, 2015.10.12, 2018.2.9)
- ② 경제복지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2.2.13, 2015.10.12)
 1. 일자리 정책, 지역경제진흥 및 소상공인지원,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2.13, 2015.10.12, 2018.2.9)
 2. 중소기업지원, 공장설립, 에너지업무, 노사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2.13, 2018.2.9)
 3. 복지지원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2.13)
 4. 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2.2.13)
 5. 공중위생업, 식품업 등 위생업종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12)

6. (삭제 2012.2.13)

제8조(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

예술과, 관광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체육청소년과를 둔다.(개정 2017.2.7)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5.14)

1.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재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교지원, 도서관진흥 및 도서관 확충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 시민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체육 및 청소년 진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2.13](전문개정 2017.2.7)

제8조의2(도시균형발전국) (개정 2011.7.25, 2012.10.29)

① 도시균형발전국은 한시기구로 하며 도시개발과, 균형발전과, 투자진흥과를 둔다. (개정 2010.2.12, 2010.11.15, 2011.7.25, 2012.2.13, 2012.10.29, 2015.12.28)

② 도시균형발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1.7.25, 2012.10.29, 2013.5.14)

1. 도시발전 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첨단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2. 산업단지의 조성 및 공여지 개발 등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3. 개발행위허가 및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4. (삭제 2015.12.28)
5. (삭제 2012.10.29) [본조신설 2008.08.01]

제9조(안전건설교통국) (개정 2007.12.28, 2011.7.25, 2013.7.26)

①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주택과, 건축과를 둔다. (개정 2007.12.28, 2009. 07. 01, 2010.2.12, 2010.11.15, 2011.7.25, 2013.5.14, 2013.7.26, 2014.10.6)

②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12.28, 2010.11.15, 2011.7.25, 2013.5.14, 2013.7.26)

1. 건설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2. 대중교통, 광역교통 및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3. 공동주택, 건축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4. 자연·인적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제10조(환경정책국) ① 환경정책국에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산림농지과, 지적과를 둔다. (개정 2007.12.28, 2010.2.12, 2010.11.15, 2011.7.25, 2012.2.13, 2012.10.29, 2014.10.6)

② 환경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2.12, 2010.11.15, 2013.5.14)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개발,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2. 공원 및 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29)
3. 산림 및 농지보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2.2.13)
4. 지적정리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0.29)

제3장 직 속 기 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두며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두고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07.12.28, 2009. 07. 01, 2011.04.15, 2013.5.14, 2016.3.2.)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개정 2007.12.28, 2011.04.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2011.04.15)

④ (삭제 2007.12.28)

제12조(소장)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지소장·진료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업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14, 2018.2.9)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4조(설치) ① 법 제113조에 따라 농업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28, 2011.04.15)

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12.28)

제15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14)

1.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 및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 (개정 2013.5.14)
3.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축산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관광농업,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식량·원예·특용·특화작물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07.06.22)
8.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07.06.22)
9. 그 밖에 농업개발, 농촌지도, 축산·어업에 관한 사항

제4장 사 업 소

제1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7.12.28, 2011.04.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2011.04.15)

제18조(소장) 사업소에 단장, 소장 또는 관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08.01, 2011.10.14)

제19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5.14, 2015.10.12)

1. 맑은물환경사업단 (개정 2011.10.14, 2015.12.28)
 - 가. 공기업회계, 상수도 시설공사, 마을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 나.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관로 등 하수도정비에 관한 사항
 - 다. 청소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광고물 정비, 주차질서 등 도시미관에 관한 사항
2.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개정 2013.12.12)
 - 가. 도서, 기록물의 비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나.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7.2.7)

4. 차량등록사업소 (개정 2012.10.29)

가. 차량등록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자동차 등록, 정기검사 및 검사관련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도로관리사업소

가.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도로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공원관리사업소 (신설 2012.10.29)

가. 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센터 (신설 2012.10.29, 2015.10.12)

가. DMZ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나. 생태관광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고용복지센터(신설 2015.10.12)

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8.2.9)

나. 기초수급자 상담, 신청접수, 복지업무 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7.25]

제5장 출 장 소

제20조(설치) ①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07.12.28, 2011.04.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2011.04.15)

제21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소관사무) 소장은 시장의 위임사무와 관할 구역 내 행정전반의 사무를 수행한다.

제6장 하 부 행 정 기 관

제2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 법 제4조의2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개정 2011.04.15, 2013.5.1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12.28, 2011.04.15)

제24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리·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12.28)

제7장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제25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362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6.22, 2007.12.28, 2008.08.01, 2010.2.12, 2010.11.15, 2011.7.25, 2012.2.13, 2012.10.29, 2013.4.5, 2013.5.14, 2013.7.26, 2013.12.12, 2014.4.18, 2014.5.20, 2015.10.12, 2016.3.2., 2017.2.7, 2018.2.9)

1. 집행기관의 정원 : 1,342명 (개정 2007.06.22, 2007.12.28, 2008.08.01, 2010.2.12, 2010.11.15, 2011.7.25, 2012.2.13, 2012.10.29, 2013.4.5, 2013.5.14, 2013.7.26, 2013.12.12, 2014.4.18, 2014.5.20, 2015.10.12, 2016.3.2., 2017.2.7, 2017.6.30, 2018.2.9)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0명

제26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 07. 01]

제27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②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09. 07. 01]

제28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 07. 01]

부칙 (2009.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12 조례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환경관리국장”을 “녹색경영국장”으로 한다.

②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보전과장”을 “자연보전과장”으로, “농업기술과장”을 “농업환경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보전담당”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0.11.15 조례 제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녹색경영국장, 건설교통국장”을 “환경정책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② 「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파주시 동파리 수북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제1호 중 “지역개발과장, 교통개발과장, 주택건축과장”을 “균형발전과장, 교통정책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⑤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자연보전과장”을 “환경보전과장”으로 한다.

⑦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소관사무란의 “도로하천과”를 “건설과”로 하고 “주택건축과”를 “건축과”로 하고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⑧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전산통신관”을 “정보통신관”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나목 중 “도시디자인국”을 “도

시건설국”으로 하며, 같은 호다목 중 “건설교통국”을 “지역개발국으로 하고, 같은 호라목 중 “녹색경영국”을 “환경정책국”으로 하며, 같은 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2010.12.24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15 조례 제939호)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내출장소 명칭 변경은 2011년 5월 1일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과주시통일촌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군내출장소장”을 “장단출장소장”으로 한다.

② 「과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내출장소”를 “장단출장소”로 한다.

③ 「과주시 동파리 수북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군내출장소장”을 “장단출장소장”으로 한다.

부칙(2011. 7.25 조례 제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25일자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과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② 「과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③ 「과주시 동파리 수북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④ 「과주시도로관리심의회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 「과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시건설국”을 “도시개발국”으로 하며, 같은 호다목 중 “지역개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며, 같은 호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아목을 신설한다.

바.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차량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⑥ 「과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환경보전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

부칙(2011.10.14 조례 제9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과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바목 중 “맑은물환경사업소”를 “맑은물환경사업단”으로 한다.

② 「과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해당업무담당 국장”을 “해당업무담당 단장”으로 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기능10급 정원 폐지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포일 기준 임용일부
터 2년 미만 경과한 기능10급 공무원은 2012년 5월 23일까지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
는 것으로 본다.

②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정원 조정으로 증원된 일반
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2.2.13 조례 제10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과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행정국장”을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② 「과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기획행정국장, 시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과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과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기획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과주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⑥ 「과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과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민지원국장, 산업경제국장”을 “경제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으로 한다.

⑧ 「과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환경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환경정책
국장”으로 한다.

⑨ 「과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담당업무부서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제5조 중 “기획행정국장”을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⑩ 「파주시 수북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

⑪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농업환경과장”을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

⑫ 「파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총무과장”을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부칙(2012.6.1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29 조례 제1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개발국장”을 “도시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②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개발국장”을 “도시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③ 「파주시 동파리 수북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개발국장”을 “도시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부칙(2012.12.28 조례 제10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정원 조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3.2.22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운정행복센터 업무개시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5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14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별표 1의 개정내용은 운정보건지소의 업무개시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26 조례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정원 조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②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한다.

④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 부분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부칙(2013.12.12 조례 제11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정원 증원의 관한 사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부칙(2014.4.18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20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6 조례 제11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정지원관"을 "정책홍보관"으로 한다.

②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자원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2015.6.1 조례 제12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규제개혁추진단장"을 "규제개혁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부칙(2015.10.12 조례 제1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취업정보센터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②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카목의 “민북관광사업소”를 “관광진흥센터”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고용복지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파. 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2015.12.28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2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9.28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3 조례 제13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명칭 란 중 “마산보건진료소”를 “두마보건진료소”로 하고, 위치 란 중 “파평면 마산리 387”을 “파평면 파평산로 363번길 34”로 한다.

부칙(2017.2.7 조례 제1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30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9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 6.30.>

본청 · 소속기관 ·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제2조 관련)

기관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본 청	파 주 시 청	파주시 시청로 50(아동동)	
직 속 기 관	파 주 시 보 건 소	파주시 후곡로 13(금촌동)	파주시 일원
	(운정보건지소)	파주시 해솔로 90	교하·운정1·운정2·운정3 동 일원
	(문산보건지소)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34	문산·법원·파주·파평·적 성·장단출장소 등
	(탄현보건지소)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649번길 24-7	탄현면 일원
	(월롱보건지소)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11	월롱면 일원
	(적성보건지소)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 1013	적성면 일원
	(파평보건지소)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 189-21	파평면 일원
	(야당보건진료소)	파주시 운정로 18(상지석동)	야당·상지석·와동·목동동 일원
	(웅담보건진료소)	파주시 법원읍 곰시길 173-7	웅담·직천·오현리 일원
	(영장보건진료소)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9	영장·기산리 일원
	(문지보건진료소)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955번길 131	문지·오금·낙하·금승리 일원
	(어유지보건진료소)	파주시 적성면 어삼로 34	장현·어유지·적암·울포리 일원
	(두마보건진료소)	파주시 파평면 파평산로 363번길 34	마산·두포·금곡리 일원
	(백연보건진료소)	파주시 군내면 통일춘길 231	백연·조산·동파리 일원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파주시 통일로 600(아동동)	파주시 일원
사업소	맑은물환경사업단	파주시 시청로 51(아동동)	
	중 앙 도 서 관	파주시 쇄재로 33(금촌동)	
	교 하 도 서 관	파주시 숲속노을로 256 (동패동)	
	차 량 등 록 사 업 소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48	
	도 로 관 리 사 업 소	파주시 중앙로 160(금능동)	

기 관 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사업소	공 원 관 리 사 업 소	파주시 경의로 1180	
	관 광 진 흥 센 터	파주시 군내면 제3땅굴로 210-358	
	고 용 복 지 센 터	파주시 중앙로 328(MH빌딩 8층)	
출장소	장 단 출 장 소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220	군내·진동·진서·장단면 일원
하부행정 기 관	문 산 읍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조 리 읍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4	
	법 원 읍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907번길 21	
	파 주 읍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 295	
	광 탄 면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광탄면 해음로 1044	
	탄 현 면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649번길 24-7	
	월 룡 면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11	
	적 성 면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 1013	
	파 평 면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 189-21	
	교 하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교하로 1401(교하동)	
	운 정 1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와동동)	
	운 정 2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와동동)	
	운 정 3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와동동)	
	금 촌 1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새꽃로 215(아동동)	
	금 촌 2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쇄재로 115(금촌동)	
	금 촌 3 동 행 정 복 지 센 터	파주시 경의로 1803(금촌동)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7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362	1,362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321	1,321					
3급	1	1					
4급	10	6	1	2	1		
5급	73	34	2	9	11	1	16
6급 이하 소계	1,236	1,236					
전문경력관 소계	1	1					
연구직 계	2	2					
연구사	2	2					
지도직 계	35	35					
지도관	-	-	-	-	-	-	-
지도사	35	35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	-	-	-	-	-	-
6급 상당 이하 계	3	3					

□ 기타참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파 주 시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1. 총무과-16621(2018.8.13)호와 관련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가족여성과장 

주무관	우소영	여성아동팀장	김영희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2018. 8. 14.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28692	(2018. 8. 14.)	접수	총무과-16790	(2018. 8. 14.)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1	팩스번호	031-940-4419	/ dnthdud79@korea.kr	/ 비공개(5)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

□ 기타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파 주 시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 총무과-16622(2018.8.13.)호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9조에 따라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주관부서	자치법규명	평가결과	비고
2018-36	총무과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 붙 임 1. 결과통보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감 사 방경수

★주무관 서영란 감사팀장 휴가 감사관 2018. 8. 16.
방경수

협조자

시행 감사관-7007 (2018. 8. 16.) 접수 총무과-16848 (2018. 8. 16.)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1 팩스번호 031-940-4089 / qaz6015@korea.kr / 비공개(5)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18-36		
자 치 법 규 명	과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 가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서영란
주 관 부 서	총무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박광현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18. 8. 16.		
통 보 내 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결과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파 주 시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총무과-16622(2018. 8. 13.)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골자

-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각종 현안에 대응하고자 신규 행정기구 신설
- 경제·복지 분야 기구 분리와 부서간 기능 조정 등
- 공무원 정원 72명 증원(당초:1,362명, 변경:1,434)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으로 시정운영의 미래 주요전략에
대한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복지 분야 기구를 분리하여 시민중심 행정을 수행
하며 지역현안사업 시행 등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
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소 통 법 무 관

주무관

김정은

규제개혁팀장

백운학

법무통계팀장

대결 2018. 8. 13.
윤은주

소통법무관

전결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7576

(2018. 8. 13.)

접수 총무과-16678

(2018. 8. 13.)

우 10894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99

/ gemgem@korea.kr

/ 비공개(5)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